

예주요양원에서 20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알려드립니다.

제8조(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 -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나. 계약 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보험 부담률에 따라 경감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(고시)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

마.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, 간식비, 병원 진료비 등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,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(원)

요양 등급	기준 일수	급여항목				비급여 항목		
		급여총액	공단부담금		본인부담금		식자재비 및 간식비	상급 병실 이용료
1등급	30일	2,174,400	일반 80%	1,739,520	일반 20%	434,880	병원 진료비 실비	1인실 120,000 2인실 60,000
			경감 88%	1,913,472	경감 12%	260,928	식 대 11,400*30 간식비 1,000*30	
			경감 92%	2,000,472	경감 8%	173,952	총액 372,000	
2등급	30일	2,017,500	일반 80%	1,614,000	일반 20%	403,500	병원 진료비 실비	1인실 120,000 2인실 60,000
			경감 88%	1,775,400	경감 12%	242,100	식 대 11,400*30 간식비 1,000*30	
			경감 92%	1,856,100	경감 8%	161,400	총액 372,000	
3등급	30일	1,922,000	일반 80%	1,550,000	일반 20%	372,000	병원 진료비 실비	1인실 120,000 2인실 60,000
			경감 88%	1,698,800	경감 12%	223,200	식 대 11,400*30 간식비 1,000*30	
			경감 92%	1,773,200	경감 8%	148,800	총액 372,000	

바. 신원 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게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
- 다)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
- 바)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- 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다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라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마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사. 이용료 등 수납 -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.

아.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.